

제8강 과세가격의 결정(2)

강 의 : 관세청 정재완 박사



<주요 강의내용>

1. 제2방법에 의한 평가
2. 제3방법에 의한 평가
3. 거래가격이 둘 이상일 때 결정
4. 제4방법에 의한 평가
5. 제5방법에 의한 평가
6. 제6방법에 의한 평가
7.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국세공무원교육원

1. 제2방법에 의한 평가

-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할 때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동종 동질물품이란?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
- ◆ 제2방법 적용요건
 -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2. 제3방법에 의한 평가

- 제1방법과 제2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 제3방법 적용요건
 -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3. 거래가격이 둘 이상일 때의 결정

-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처리
-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
-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4. 제4방법에 의한 평가(1)

□ 제1방법 내지 제 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을 일단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가격에서 다음 '가'호의 금액에서 '나'호 내지 '라'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이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

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다.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5. 제4방법에 의한 평가(2)

- ◆ 당해 물품 또는 동종 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의 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요청하면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 가.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 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다.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라.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6. 제5방법에 의한 평가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7. 제6방법에 의한 평가(1)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 합리적 기준 적용의 예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
 - 제4방법의 적용에 있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

8. 제6방법에 의한 평가(2)

- 제6방법에 의할지라도 적용할 수 없는 과세가격의 기준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선택 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가격 기준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9.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
- ①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서(투자계획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 ②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③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④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 ⑤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